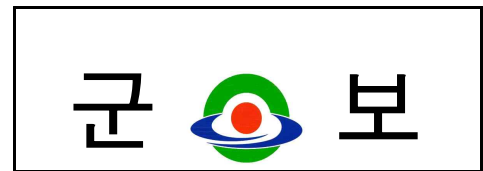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389호 2022. 9. 8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- 「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」, 「오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」, 「상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」 신기술·특허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위원별 평가 결과 공고(예천군 공고 제2022-1162호)
-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2-1170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**「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」, 「오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
정비사업」, 「상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」
신기술·특허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위원별 평가 결과 공고**

예천군에서 시행하는 「용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」, 「오류 자연재해
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」, 「상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」에 적용할
신기술·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위원 별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및 평가 위원을
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2년 9월 8일

예 천 군 수

- 붙 임 1. 심의위원 1부.
2. 위원별 평가결과(별첨). 끝.

용궁 외 2개지구 신기술 특허 기술제안서 평가(심의)위원 명단

소 속	성 명	비 고
계	7명	
부경엔바이로	임영현	
(주)평화엔지니어링	박현철	
한국농어촌공사	조현욱	
(주)삼안	김일섭	
(주)경동엔지니어링	이수경	
한국철도기술연구원	김이현	
신촌종합건설(주)	김은기	

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

입법예고

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8일

예 천 군 수

1. 제정이유

청소년의 상담, 긴급구조, 자립,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(안 제3조)

-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·복지 지원
- 상담·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- 상담 자원봉사자, 청소년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
-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
- 폭력,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·의료 지원, 일시 보호 지원
-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
-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협력체제 구축
-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, 자료수집 및 제공
-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
-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사업
-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나.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및 지원 (안 제4조)

-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제4항에 의거 위탁 관리·운영할 수 있음

다.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조직 및 구성 (안 제5조)

- 센터장 1명과 관리·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
-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,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

라.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·운영 (안 제6조)

-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, 청소년복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

3. 제정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주민복지실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parkchanss15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주민복지실

3) 팩스 : 054-650-6360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주민복지실(전화 : 054-650-6213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

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 에서도 확인하
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조례 제 호

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

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명칭은 예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
② 센터는 예천읍 충효로 393,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내에 둔다.

제3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·복지 지원
2. 상담·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3. 상담 자원봉사자, 청소년지도자 등의 교육 및 연수
4.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
5. 폭력,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·의료 지원, 일시 보호 지원
6.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
7.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 연계 협력체제 구축

8.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, 자료수집 및 제공
9.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
10. 청소년 참여 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11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사업
12.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4조(운영 및 지원)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·운영한다. 다만,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」 제22조, 제23조 및 「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5조(조직 및 구성) ① 센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(이하“센터장”이라 한다) 1명을 두고, 관리·청소년대상 실무업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다.

③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, 설치·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4조제4항을 따른다.

④ 센터 직원의 보수·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「예천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」 또는 여성가족부 「청소년사업 안내 지침」을 따른다.

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등

제6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·운영)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, 청소년복지 및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, 공공기관,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이하 “통합지원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항은 영 제4조를 따른다.

제7조(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)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예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(이하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
2.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
3.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·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
4.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
5.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
6.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,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

제안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8조(실무위원회 설치 등)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
2.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·평가 및 판정
3.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
4. 그 밖에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

제4장 보칙

제9조(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) 센터의 직원과 위원회 위원 등은 상담,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10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도·감독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지도·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, 「청소년사업 안내 지침」,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예천군 사무의

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등을 준용한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